

『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의 운영 효율성 및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,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함(안 제20조)
- 도서관의 운영 위탁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(안 제21조)
- 수탁관리자의 의무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22조)
 - 지역사회 문화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정서함양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노력하며, 수탁관리자로서의 의무 준수
 - 수탁관리자는 다른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재위탁을 할 수 없으며,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- 도서관 운영 위탁시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검사결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(안 제23조)
- 수탁관리자의 의무 및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 불이행시 위탁 운영 철회(안 제24조)
-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재산의 손해보험 가입(안 제25조)
- 시장의 승인 없이는 도서관 시설물의 원형 변경 불가(안 제26조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서비스 향상 및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구미시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20조 내지 제26조를 각각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도서관의 위탁운영 방법 및 지원, 수탁관리자의 의무 및 감독, 위탁운영의 철회 및 재산관리 조항 등을 신설하면서
-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,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으며
-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지 못하도록 수탁자 의무조항을 규정하였음
- 또한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,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
- 수탁관리자가 협약위반이나 유지관리 소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임의변경 금지조항을 규정하였음

○ 조례안 검토결과

-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며
- 앞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민간위탁에 관련된 동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·단점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